



2025. 7.

창업기업 범위 해설

 중소기업부



유의사항

법령 개정 및 개별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사오니, 사례별로 추가적인 심사와 판단이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창업기업 범위 해설

I 창업과 창업기업의 개념

1. 창업의 개념	1
2. 창업기업의 개념	1
3.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3

II 창업 범위 기준

1. 창업 인정 기준	4
2. 창업 제외 기준	8
① 개인사업자	8
1) 사업을 상속·증여받은 후 같은 종류의 개인사업 개시	8
2)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개인사업 개시	9
3)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을 추가 개시 (개인사업자 다수 등록)	10
② 법인	12
1)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12
2)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14
3) 기존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새로운 법인기업을 설립	15
4)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인 사람이 새로 설립된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17
5) 법인인 기업의 형태 변경(조직변경)	18
③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9
3. 창업 이력 및 지배기업 제외 대상	20
① 창업 이력 제외 대상	20
② 지배기업 제외 대상	24

CONTENTS

창업기업 범위 해설

Ⅲ

창업기업 확인 제도

1. 창업기업 확인 제도 개요	25
2. 제출 서류	26
3. 처리 기한	28
4. 창업기업 확인서	29
5. 이의신청	31
6.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32

별첨

별첨1. 동종/이종업종 판단 기준	33
별첨2. 종전 시행령 적용 대상(i) ('20. 10. 8. ~ '22. 6. 28. 설립 기업)	34
별첨3. 종전 시행령 적용 대상(ii) ('20. 10. 7. 이전 설립 기업)	40
별첨4. 자주 하는 질문(FAQ)	44

I

창업과 창업기업의 개념

1 창업의 개념

-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행위”를 창업이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게시된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mss.go.kr) → 주요정책 → 법령정보 → 중소기업·조세지원 해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8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의 개념

-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합니다.
-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정부는 자금·경영·판로·교육 및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8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6. 12.] [대통령령 제35379호, 2025. 3. 11., 일부개정]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 시책의 대상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지만, AI,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기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27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산업 창업 분야〉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② 빅데이터	⑯ 미래형 선박
③ 5G+	⑰ 재난/안전
④ 블록체인	⑱ 스마트시티
⑤ 서비스플랫폼	⑲ 스마트홈
⑥ 실감형콘텐츠	⑳ 신재생에너지
⑦ 지능형 로봇	㉑ 이차전지
⑧ 스마트제조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⑨ 시스템반도체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⑩ 자율주행차	㉔ 우주
⑪ 전기수소차	㉕ 차세대 원전
⑫ 바이오	㉖ 양자
⑬ 의료기기	㉗ 사이버 보안
⑭ 기능성 식품	

II

창업 범위 기준

1 창업 인정 기준

-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크게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 설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 **개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법인**은 **법원등기소에 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설립등기”**하는 것으로 설립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으로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 1) 사업을 상속·증여받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사업자로서 개시하는 경우
 - 2)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 단, 부도·파산으로 폐업 시 2년 제한,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예외
 - 3)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 1)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 단, 기존에 창업기업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사업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

2)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단, 부도·파산으로 폐업 시 2년 제한,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예외

3) 법인인 기업 및 그 소속 임원이 합산하여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의 과점주주인 사람이 새로 설립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과점주주란, 주주(또는 사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또는 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 총액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의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5)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고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형태변경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창업 인정

- 다만, 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의 창업은 제외됩니다.

• 또한,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간은 제외 사유(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지속해서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 형태별 창업 및 제외 기준〉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등기
사업 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등기부등본 상의 법인 설립등기일
제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의 상속·증여 → 같은 종류 사업 개시 ② 개인사업 폐업 → 같은 종류 사업 개시 (폐업 3년 후 개시, 성실경영실패자 등은 창업 인정) ③ 기존 개인사업 영위 + 신규 개인사업 추가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 개인사업 영위 + 신규 법인 설립 (최대출자자, 친족 합산) ② 개인사업 폐업 → 같은 종류 사업 법인 설립 (폐업 3년 후 설립, 성실경영실패자 등은 창업 인정) ③ 기존 법인 영위 + 다른 법인 설립 (법인, 임원 합산 지분 50% 초과) ④ 기존 법인 과점주주가 신규 법인 과점주주 ⑤ 법인 형태변경 → 같은 종류 사업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6. 12.] [대통령령 제35379호, 2025. 3. 11., 일부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71호)

제2조(창업기업 요건 유지)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2 창업 제외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사업의 내용과 조직이 완전히 새로운 경우에만 창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중소기업 설립 이전에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설립 당시 영위하고 있는 사업(기존 사업)이 있는 경우, 새롭게 설립된 기업(신규 기업)의 업종·형태·출자관계 등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개인사업자

1) 사업을 상속·증여받은 후 같은 종류의 개인사업 개시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개인이 같은 종류의 개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기존 사업의 계속으로 볼 수 있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사례1)
- 상속·증여 받은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 사례2)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 사례3)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동일업종 판단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33쪽 참고)

사례1

甲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반 악기 제조업(33201)' 개인사업 A를 상속 받고, 개인사업 B를 신규 개시하여 '건반 악기 제조업(33201)'을 이어가는 경우

→ B는 창업 아님

사례2

甲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육류 도매업(46313)' 개인사업 A를 상속 받고, 개인사업 C를 개시하여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46321)'으로 이어가는 경우
 → C는 창업으로 인정

사례3

甲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설장비 운영업(42600)' 개인사업 A를 상속 받고, 법인 D를 신규 설립하여 '건설장비 운영업(42600)'을 이어가는 경우
 → D는 창업으로 인정

2)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개인사업 개시

① 폐업 후 3년이 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3년이 되기 전에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례1, 사례2)
 ※ 단, 부도·파산으로 폐업 시 2년 제한 (☞ 사례3)
-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의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하고,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폐업 후 기간 및 업종에 제한 없이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경영 평가'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47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례4)
- 폐업 후 3년(부도·파산 시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폐업 후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사업 개시

-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면 폐업 후 경과된 기관과 상관없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1

某甲이 '육류 도매업(46313)' 개인사업 A를 '21. 1. 1.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개인사업 B를 '24. 1. 2. 설립하여 '육류 도매업(46313)'을 영위하는 경우
→ B는 창업으로 인정

사례2

某甲이 '사료 도매업(46203)' 개인사업 A를 '21. 1. 1.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개인사업 B를 '23. 1. 2. 개시하여 '사료 도매업(46203)'을 영위하는 경우
→ B는 창업 아님

사례3

某甲이 '과실류 도매업(46311)' 개인사업 A를 '21. 1. 1. 부도·파산으로 폐업하고, 개인사업 B를 '23. 1. 2. 개시하여 '과실류 도매업(46311)'을 영위하는 경우
→ B는 창업으로 인정

사례4

某甲이 '가전제품 소매업(47320)' 개인사업 A를 '21. 1. 1. 폐업하고, '가전제품 소매업 (47320)'으로 개인사업 B를 '21. 5. 1. 개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여 '22. 1. 1.에 동종업종 창업 인정 확인증을 받은 경우
→ B는 '22. 1. 1. 이후 창업 인정 (단, 사업개시일은 '21. 5. 1.)

3)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을 추가 개시(개인사업자 다수 등록)

- 기존 개인사업자를 계속 영위하면서 개인사업을 신규로 추가 개시(추가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연인 1인은 개인사업자를 다수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책임과 권리가 개인 1인에게 귀속되고, 사업자와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기 어려워, 개인사업을 추가로 개시(추가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개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례1)

주체	폐업 여부	설립	창업 여부
개인	폐업 × (기존 사업 계속 영위)	개인 설립	동종 : 창업 ×
			이종 : 창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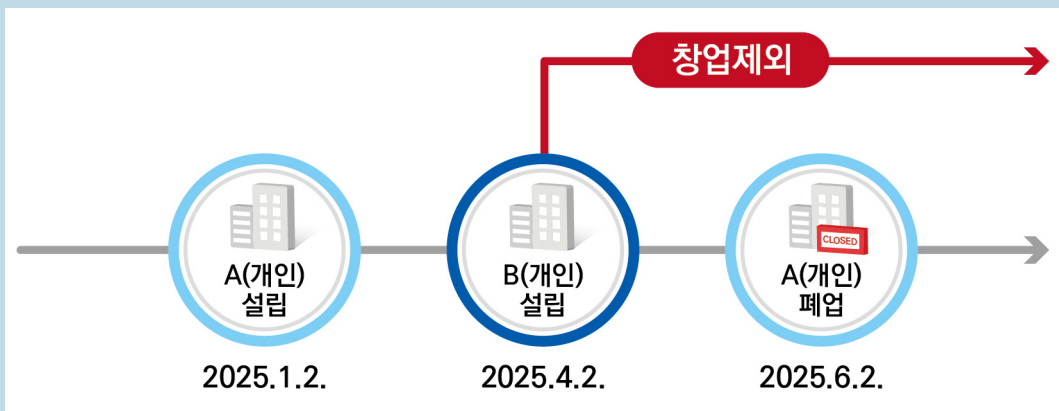
- 신규 사업을 추가로 개시(추가 사업자 등록)한 이후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이는 개인사업 확장 후 축소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개인사업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례2)

사례1

甲이 '보안프로그램(63991)' 개인사업자 A를 영위하면서 '음성변환서비스업(63999)' 개인사업 B를 개시하는 경우 → B는 창업 아님

사례2

시각디자인업 개인사업 A를 영위하면서 산업디자인업 개인사업 B 개시 후 개인사업 A 폐업 시 → B는 창업기업 아님



2 법인

1)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중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설 법인의 주식을 친족*과 합하여 50%를 초과 소유**하거나 최대주주가 된다면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례1, 사례2, 사례3)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 최대주주의 범위를 산정할 때,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주주들을 모두 최대주주로 판단합니다.(☞ 사례4)

사례1

甲이 '보안프로그램(63991)' 개인사업 A를 영위하면서 甲이 주식을 100% 소유하는 법인 B를 설립하고 '보안프로그램(63991)'을 영위하는 경우

→ B는 창업 아님

사례2

甲이 '보안프로그램(63991)' 개인사업 A를 영위하면서 甲이 40%, 4촌 관계의 친척 乙이 60%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 B를 설립하고, '보안프로그램(63991)'을 영위하는 경우

→ B는 창업 아님 (甲, 乙 보유주식 합산 100%)

사례3

甲이 '보안프로그램(63991)' 개인사업 A를 영위하면서 甲이 40%, 친구 丙이 60%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 B를 설립하고 '보안프로그램(63991)'을 영위하는 경우

→ B는 창업으로 인정

사례4

甲이 '보안프로그램(63991)' 개인사업 A를 영위하면서 甲이 40%, 친구 丁이 40%, 친구 戊가 20%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 B를 설립하고 '보안프로그램(63991)'을 영위하는 경우
 → B는 창업 제외 (甲, 丁 모두 최대주주)

- 다만, 기존에 창업기업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사업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까지 승계하여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포괄적 이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① 기존 개인사업자와 법인전환 후 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할 것
 - ② 기존 개인사업자와 법인전환 후 기업 간 동종업종일 것
 - ③ 자산, 사업 및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을 것
 - ④ 법인전환 후 기존 개인사업자가 폐업하였을 것

〈관련 규정〉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71호)

제8조(법인전환) ①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동종의 법인인 중소기업자로 전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의 주업종이 동종 업종일 것
3. 양도기업의 자산, 사업 및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일 것
4. 법인전환 후 양도기업이 폐업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시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양도기업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로 보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의 산정은 양도기업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법인전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기업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

-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폐업한 후 3년 이내에 이전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기존 사업과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례1, 사례2)

※ 단, 부도·파산으로 폐업 시 2년 제한 (☞ 사례3)

-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의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하고,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폐업 후 기간 및 업종에 제한 없이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경영 평가’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47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4)

사례1

甲이 ‘계면활성제 제조업(20421)’ 개인사업자 A를 ’21. 1. 1.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법인 B를 ’24. 1. 2. 설립하여 ‘계면활성제 제조업(20421)’을 영위하는 경우
→ B는 창업으로 인정

사례2

甲이 ‘화장품 제조업(20423)’ 개인사업자 A를 ’21. 1. 1.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법인 B를 ’23. 1. 2. 설립하여 ‘화장품 제조업(20423)’을 영위하는 경우
→ B는 창업 아님

사례3

甲이 ‘중고 가구 소매업(47861)’ 개인사업자 A를 ’21. 1. 1. 부도·파산으로 폐업하고, 법인 B를 ’23. 1. 2. 설립하여 ‘중고 가구 소매업(47861)’을 영위하는 경우
→ B는 창업으로 인정

사례4

甲이 '건설 폐기물 처리업(38230)' 개인사업자 A를 '21. 1. 1. 폐업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업(38230)'으로 법인 B를 '21. 5. 1. 설립,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여 '22. 1. 1.에 동종업종 창업 인정 확인증을 받은 경우

→ B는 '22. 1. 1. 이후 창업 인정 (단, 사업개시일은 '21. 5. 1.)

3) 기존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

-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분야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신설 법인에 대한 창업 인정 여부는 신설법인이 기존법인과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결정되며, 기존 법인 또는 기존 법인의 임원이 신설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배기업 제외 대상*이 아닌 기존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신설법인의 주식 소유 지분 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배기업 제외 대상 :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전문투자자 등(25쪽 참고)

- 신설법인의 주식 소유 비율은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법인 명의의 주식이 없는 경우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 등기된 이사를 말하며, 사외이사(現 독립이사), 감사는 제외됨

- 다만, 위 제외 기준을 판단할 때 기존 법인 임원이 기존 법인의 주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창업 인정 여부 판단례〉

연번	사례	A와 그 임원의 B 주식 소유 비율(%)	B 창업 여부
1	신설 법인 B의 주식을 기존 법인 A가 100%, A의 대표이사 甲이 0% 소유	$100+0 = 100$	X
2	신설 법인 B의 주식을 기존 법인 A가 20%, A의 대표이사 甲이 20%, A의 사내이사 乙이 30% 소유	$20+20+30 = 70$	X
3	신설 법인 B의 주식을 기존 법인 A가 0%, A의 대표이사 甲이 50%, A의 사내이사 乙이 20% 소유	$0+50+20 = 70$	X
4	신설 법인 B의 주식을 기존 법인 A가 20%, A의 대표이사 甲이 30% 소유	$20+30 = 50$	O
5	신설 법인 B의 주식을 기존 법인 A가 20%, A의 대표이사 甲이 20%, A의 사내이사 乙이 10% 소유	$20+20+10 = 50$	O
6	신설 법인 B의 주식을 기존 법인 A가 0%, A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A의 대표이사 甲이 100% 소유	$0+100 = 100$	X

- 주식지분 판단은 새로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신설 법인이 창업 당시에 위 요건에 해당하여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면 설립 이후 지분율 조정, 기존 법인의 해산, 임원의 기존 법인 탈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71호)

제5조(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 ①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 주식의 지분 소유는 다른 법인인 기업이 소유한 주식 및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른 법인인 기업이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주주들을 모두 최대주주로 판단한다.

4)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인 사람이 새로 설립된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 주주(또는 사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또는 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 총액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과점 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라고 하며, 법인인 기업의 주주는 법인의 임원이 아니더라도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①친족관계(혈족, 인척 등), ②경제적 연관관계(임원, 사원인 등), ③경영지배관계(주주, 출자자 등)
 (「국세기본법」 제1조의2 및 제18조의2 참고)

- 이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 법인인 기업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창업 인정 여부 판단례〉

연번	사례	甲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B 창업 여부
1	기존 법인(A)의 주식을 甲이 70% 소유 신설 법인(B)의 주식을 甲이 51% 소유	(A법인) 해당 (B법인) 해당	X
2	기존 법인(A)의 주식을 甲이 40%, 甲의 아들 乙이 30% 소유 신설 법인(B)의 주식을 甲이 51% 소유	(A법인) 해당 (B법인) 해당	X
3	기존 법인(A)의 주식을 甲이 60% 소유 신설 법인(B)의 주식을 甲이 30%, 甲의 아들 乙이 30% 소유	(A법인) 해당 (B법인) 해당	X
4	기존 법인(A)의 주식을 甲이 60% 소유 신설 법인(B)의 주식을 甲이 30% 소유	(A법인) 해당 (B법인) 비해당	O
5	기존 법인(A)의 주식을 甲이 60% 소유 신설 법인(B)의 주식을 甲(A법인의 임원)이 10%, 甲의 아들 乙이 40%, 丙(A법인의 임원)이 10%소유 * 동일 법인의 임원끼리는 경제적연관관계 등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A법인) 해당 (B법인) 비해당	O

5) 법인인 기업의 형태 변경(조직변경)

- 법인인 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유지한다면 기존 사업과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형태 변경 후 기존과 다른 종류의 사업(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이때, 법인의 형태 변경은 기존의 「상법」상 법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다른 형태의 「상법」상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유한회사였던 법인이 추가적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가 법인의 형태 변경입니다.
- 형태변경 시 사업개시일은 형태 변경을 완료한 날이 아닌 형태변경 전 법인의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③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대부분의 업종을 창업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일부 유흥 및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창업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창업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6. 12.] [대통령령 제35379호, 2025. 3. 11., 일부개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 창업 이력 및 지배기업 제외 대상

1 창업 이력 제외 대상

- 창업의 인정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사업자 영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창업기업에 인정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자 이력이 창업기업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분관계 등에서 창업 제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사업체의 유형에 따라 창업 이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외 대상이 되는 창업 이력은 창업기업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현행)

[시행 2025. 6. 1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71호, 2025. 6. 12., 일부개정]
제4조(창업이력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할 때 기존의 사업자 이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법인(「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외국법인연락사무소, 법인이 아닌 단체, 종교단체, 영리법인의 지점
2. 기존 사업자의 설립일이 2019년 6월 12일 이전이면서 주업종이 종전의 영(대통령령 제 29851호, 2019. 6. 11.)에 따라 2019년 6월 11일까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물적 시설 및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 사업자

1)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 종교단체, 영리법인의 지점

- 기존 사업체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이력에서 제외되며, 비영리법인이 새로운 법인의 주식 지분 50% 이상을 취득하여 설립하는 등 창업 제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창업 이력에 포함됩니다.

〈유형에 따른 창업 이력 제외 여부〉

창업이력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 외국법인연락사무소 • 법인이 아닌 단체 • 종교단체 • 영리법인의 지점
창업이력에 포함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법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2) 기존 사업자의 설립일이 2019. 6. 12. 이전인 기업 중 주업종이 2019. 6. 11. 까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

- ‘19. 6. 12. 개정 및 시행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전에는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 점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에서 제외되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설립한 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그 설립일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이라면 사업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창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19. 5. 30.에 창업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25. 1. 24.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10쪽) 참조

- 다만, 기존 창업 제외 업종이었던 기업이 '19. 6. 12. 이후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사업 이력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창업 제외 업종 변경 이력〉

개정 전 창업 제외 업종	개정 이후 창업 제외 업종(현행)	비고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	'19. 6. 12.부터 제외 업종 미해당
부동산업	-	'16. 11. 29. 부터 제외 업종 미해당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20명 이상 법인 음식점업은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19. 6. 12. 변경
무도장운영업	무도유흥주점업	'19. 6. 12. 변경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19. 6. 12. 부터 제외 업종 미해당
기타 갠블링 및 베탱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19. 6. 12. 변경 '24. 8. 28. 추가*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서비스업 제외)	-	'19. 6. 12. 부터 제외 업종 미해당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서 분리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물적 시설 및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사업자

- 기존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물적 시설과 고용한 근로자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었던 경우 사업자 이력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6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자(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지배기업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존 법인의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고려할 때 기존 법인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법인과 연속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배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전문투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비영리법인 등
- 따라서 지배기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법인이 신설 법인의 주식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더라도 신설 법인은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6. 1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71호, 2025. 6. 12., 일부개정]
제6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5. 비영리법인

III

창업기업 확인 제도

1 창업기업 확인 제도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참여 및 각종 지원 시책 참여 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창업기업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기업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 확인기관은 신청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며, 신청 내용과 증빙서류를 검토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개요〉

-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s://cert.k-startup.go.kr>
※ 인터넷 검색창에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을 검색하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 가능
- (지원내용) 창업기업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 창업기업 확인서 온라인 발급
- (창업기업 콜센터 운영) ☎ 1811-3773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Startup Business Confirmation System.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logo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text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several tabs: '소개', '창업기업 자가진단', '확인서 발급신청', and '확인서 관리'. The '창업기업 자가진단' tab is selected.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창업기업 확인절차' and has three sub-sections: '창업기업 기준', '확인서 발급 절차', and '제출서류'. The '창업기업 기준' sub-section is expanded, showing the definition of a startup business. The definition states that a startup business is a small business established after the date of business commencement, and it must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1. 'Startup' refers to a small business established after the date of business commencement. 2. 'Startup business' refers to a small business established after the date of business commencement, and it must be a business that has not been established for more than 7 years since the date of business commencement.

2 제출 서류

- 신청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필수서류와 함께 신청기업별로 해당 사항이 있는 선택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기관은 아래에 명시된 서류 외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공통 (개인/ 법인)	1. 사업자등록증명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신청기업이 휴업 중인 경우 "휴업사실증명" 제출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2.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전원 제출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3. 중소기업 확인서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점에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본점 이전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관할소 모두 발급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2. 주주명부(출자자 명부)	- 신청기업의 설립 시 및 신청 시 주주명부(출자자 명부) 모두 제출 - 신청일 7일 이내 작성분에 한함 - "원본대조필" 작성, 법인 날인 필수
	3. 임원 명부	- 설립 시 및 신청 시 임원명부 모두 제출 - "원본대조필" 작성, 법인 날인 필수 - 임원의 변경 내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복사본 하단에 원본 대조필, 신청일, 법인 날인 후 제출

〈선택서류(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대상자		유의사항
공통 (개인/ 법인)	1. 폐업사실증명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 복수의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해당 사실증명 모두 제출
	2. 사업자등록증명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신청기업 외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 제출
	3. 휴업사실증명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신청기업 외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부도 또는 파산 확인 서류	폐업한 사업자의 폐업사유가 부도 또는 파산인 경우	- 파산선고결정문, 파산면책선고문, 금융기관미지급증명서 등 - 원본대조필 작성, 날인 필수
	5. 상속/증여 확인 서류	신청기업을 상속(또는 증여) 받아 설립한 경우	-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등 - 원본대조필 작성, 날인 필수
	6.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공동사업자를 퇴임(탈퇴)한 적이 있는 경우	- 복수의 사업자의 공동사업자를 퇴임(탈퇴)한 경우 해당 사실증명 모두 제출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7. 성실경영 심층평가 (동종업종) 통과 확인증	개인사업자 폐업 후 3년 내에 동종업종의 개인/법인 설립하고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법인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신청기업의 주주현황에 다른 법인 또는 그 소속 법인의 임원이 있는 경우	- 본점 이전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관할소 모두 발급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3 처리 기한

- 창업기업 확인 신청은 신청기업이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처리됩니다.
- 확인기관은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위해 지체된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확인기관의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확인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창업기업 확인서

- 확인기관의 심사 결과 신청기업이 창업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아래와 같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3. 19.>

발급번호: 제 호

창업기업 확인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대 표 자:

4. 주 소(본점):

<지점현황>

000지점:

유효기간: . . . ~

(초기창업기업 기간: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유효기간) 해당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타 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발급 이전 사업 영위 기간에도 창업기업이었음이 인정됨

※ (초기창업기업 기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표시한 것으로, 초기창업기업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창업기업으로 볼 수 있음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창업기업으로 확인 받을 필요가 있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가 발급된 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서의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1)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
 -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3) 지점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 4) 개명으로 대표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 수정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단순 수정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기준에 변동이 생긴 경우 창업기업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 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

-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은 확인기관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사유 및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통보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이후 확인기관은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 아래의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기관은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창업기업 확인 후 창업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확인기관이 창업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고와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위 취소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기관은 반드시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소급하여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해당 기업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 외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취소됩니다.

별첨1 | 동종/이종업종 판단 기준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5자리 중 기존 업종과 비교하여 5자리 숫자가 모두 같으면 같은 종류의 사업(동종업종)에 해당하고, 하나의 자리라도 숫자가 다르면 다른 종류(이종업종)의 사업에 해당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5자리(대/중/소/세/세세 분류) 〉

1	2	3	4	5	
대	중	소	세	세세	
6	3	9	9	1	보안프로그램
6	3	9	9	9	음성변환서비스업

* '20. 10. 7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 10. 8. 부터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20.10. 7. 이전 설립 기업에도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자등록증의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와 다르며,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국세청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이종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영위 업종 중 주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만 판단합니다. 주업종·부업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6. 12.] [대통령령 제35379호, 2025. 3. 11., 일부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별첨2 | 종전 시행령 적용 대상(i) (’20. 10. 8. ~ ’22. 6. 28. 설립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20. 10. 8.과 ’22. 6. 29.에 일부 개정·시행되었으나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 10. 8.부터 ’22. 6. 28. 사이에 설립된 기업에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별첨2에서는 이에 대한 창업 여부 판단 방법을 안내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 10. 8.부터 ’22. 6. 28. 사이에 사업을 개시하였더라도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현행 시행령과 동일하므로 현행 기준에 따라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인인 기업의 경우, ’22. 6. 29. 개정 시에 창업 제외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시행령 개정 시 창업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한 경우에는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립 당시의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8호, 시행 2010. 10. 8.)을 기준으로 창업 범위 요건을 적용**합니다.
-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 인정 범위가 종전보다 축소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1) 기존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

- 종전에는 기존 법인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소속임원의 주식관계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없었으며, 50% 초과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 * 기존 법인이 신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 법인 임원의 주식 소유 지분만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제정(’22. 6. 29.)으로 신설
- 따라서 당시 신설 법인의 발행주식 중 기존 법인 소유의 주식이 없다면, 기존 법인 소속 임원이 신설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도 창업으로 인정했습니다.

- 예를 들어, 법인의 소유 지분이 0%이고 임원의 합산 소유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22. 6. 28. 이전 설립 기업의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나, '22. 6. 29.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창업 인정 여부 판단례〉

연번	사례	A와 그 임원의 B 주식 소유 비율(%)	B 창업 여부
1	'22. 5. 1. 신규 설립된 법인 B의 주식을 기존 법인 A가 100%, A의 대표이사 甲이 0% 소유	100+0 = 100	X
2	'22. 5. 1. 신규 설립된 법인 B의 주식을 기존 법인 A가 20%, A의 대표이사 甲이 20%, A의 사내이사 乙이 30% 소유	20+20+30 = 70	X
3	'22. 5. 1. 신규 설립된 법인 B의 주식을 기존 법인 A가 0%, A의 대표이사 甲이 50%, A의 사내이사 乙이 20% 소유	법인 A의 소유분이 없으므로 0	O
4	'22. 5. 1. 신규 설립된 법인 B의 주식을 기존 법인 A가 20%, A의 대표이사 甲이 30% 소유	20+30 = 50	O
5	'22. 5. 1. 신규 설립된 법인 B의 주식을 기존 법인 A가 20%, A의 대표이사 甲이 20%, A의 사내이사 乙이 10% 소유	20+20+10 = 50	O

(경우2)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인 사람이 새로 설립된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 기존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이 없었으므로 기존 법인 과점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창업으로 인정했습니다.
- *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조항은 시행령 개정 시에 신설('22. 6. 29.)
- '22. 6. 28.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타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창업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의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 인정 범위가 종전보다 축소된 유형 외의 경우는 현행 시행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6. 12.] [대통령령 제35379호, 2025. 3. 11., 일부개정]

부 칙(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의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0월 8일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신규조문 대비표 〉

중전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8호)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5379호)
<p>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u>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u>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종전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8호)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5379호)
<p>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p> <p>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u>100분의 30 이상</u>(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p> <p>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p>	<p><u>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u></p> <p>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u>100분의 50을 초과하여</u>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p> <p>5. 법인의 <u>과점주주</u>(「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p> <p>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p> <p>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p>

종전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8호)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5379호)
<p>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p> <p>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p>	<p>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p> <p>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별첨3 | 종전 시행령 적용 대상(ii) ('20. 10. 7. 이전 설립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20. 10. 8. 개정에 따라, 법적 창업의 인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 10. 7. 이전 설립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첨3에서는 이에 대한 창업 여부 판단 방법을 안내합니다.
 - 시행령 개정 전에 종전의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시행)에 따라 창업하여 창업으로 인정된 자가 개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현행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또한,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설립한 기업이 종전 시행령에서는 창업이 아니었지만 현행 시행령을 기준으로 창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20. 10. 7. 이전에 설립한 기업이 현행 시행령 및 종전 시행령 중 어느 하나의 창업 인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창업 여부 판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1) 종전 시행령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창업인정)

- 아래 표의 사례들은 '20. 10. 7. 이전에 당시 시행령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했던 사례들로, '20. 10. 7. 이전에 설립한 기업이 아래 사례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20. 10. 7. 이전 창업 인정 사례〉

연번	사례
1	A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않고 최초로 사업장을 설립
2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지 않고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
3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A 명의로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
4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 (장소 무관)
5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

연번	사례
6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이 설립 (업종 무관)
7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 (장소 무관)
8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
9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이 설립 (업종 무관)

* 사업승계 후 동종업종 영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의 형태변경이 아닌 경우에 한함

(경우2) 종전 및 현행 시행령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아래 표의 사례들은 종전 및 현행 시행령을 모두 검토하여 창업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례들입니다.
- '20. 10. 7. 이전에 설립한 기업이 아래 사례에 해당한다면, 현행 시행령 및 종전 시행령 중 어느 하나의 창업 인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20. 10. 7. 이전 설립 기업 대상 창업 여부 검토 사례 〉

연번	사례	창업여부	
		종전	현행
1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B법인이 설립	- 원칙적으로 창업 아님 - 단, 사업 승계로 판단되는 경우 분리승계의 예외* 해당 시에만 창업인정	- 원칙적으로 창업 아님 - 단,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해 창업 인정 가능
2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	- 원칙적으로 창업 인정 - 단, 사업 승계로 판단되는 경우 분리승계의 예외 해당 시에만 창업인정	- 지분관계 검토 후 판단
3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	- 원칙적으로 창업 아님 - 단, 사업 승계로 판단되는 경우 분리승계의 예외 해당 시에만 창업인정	- 지분관계 제외 사유 없는 경우 창업인정
4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	- 원칙적으로 창업 인정 - 단, 사업 승계로 판단되는 경우 분리승계의 예외 해당 시에만 창업인정	- 지분관계 제외 사유 없는 경우 창업인정
5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	- 원칙적으로 창업 아님 - 단, 사업 승계로 판단되는 경우 분리승계의 예외 해당 시에만 창업인정	- 원칙적으로 창업 아님 - 단,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해 창업 인정 가능
6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 명의로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	- 창업 아님	- 원칙적으로 창업 아님 - 단,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해 창업 인정 가능

* 사업 분리승계의 예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2017. 7. 26.) 제2조 (사업분리의 요건) (신구조문대비표 42쪽 참고)

- 경우 1, 2의 15가지 사례 이외의 경우는 현행 시행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신규조문 대비표〉

종전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3호)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5379호)
<p>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시행 2017. 7. 26.]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p>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종전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3호)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5379호)
<p>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p>	<p>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p> <p>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p> <p>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p> <p>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p> <p>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p> <p>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 기준에 따른다.</p>

별첨4 | 자주 하는 질문(FAQ)

[FAQ 목차]

번호	사례	쪽수
1	창업의 범위 판정 시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47
2	사업 승계 시 창업기업 인정 여부	48
3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49
4	타인의 사업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50
5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	51
6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	52
7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	53
8	개인사업자를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에 중소기업을 운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54
9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추가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새로운 개인사업자의 창업 인정 여부	55
10	개인사업의 공동사업자 모두가 창업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56
11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공동사업 해지 후 개인기업의 신설 시 창업 해당 여부	57
12	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58
13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기업의 신설 시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59
1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개인·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60

번호	사례	쪽수
15	기존 법인을 폐업한 후 기존 법인의 임원이 동종 업종의 법인을 다시 설립하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	61
16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62
17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했을 때, 법인의 최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63
18	개인사업 운영 중 설립하여 창업기업으로 인정된 동종 업종 법인의 주식을 개인사업자 폐업 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64
19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창업 해당 여부	65
20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다른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66
21	기존 법인의 임원직을 유지하면서 설립한 법인의 경우라도 새로운 법인이 창업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나요?	67
22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창업 제외 기준에 해당하였으나 추후 시정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68
23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지배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69
24	기존 법인의 임원이 등기상 사임한 날과 실제 사임한 날이 다른 경우	70
25	기존 법인을 대표이사로서 운영 중 국세청에 폐업 신고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인정 여부	71
26	기존 법인이 해산간주된 이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72
27	기존 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기존 법인 소속 임원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73
28	창업기업인 법인이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재개 시 창업기업 인정 여부	74
29	기존 법인의 임원을 사임하고 신설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75

번호	사례	쪽수
30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매각하는 경우	76
31	창업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77
32	1인이 주식 100%를 소유한 두 법인을 같은 날 설립한 경우 창업인정 여부	78
33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79
34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립할 경우 창업 인정 여부	80
3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81
36	서로 다른 두 법인이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시 창업기업 인정 여부	82
37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83
38	기존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던 기업의 창업기업 인정 여부	84

1 | 창업의 범위 판정 시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Q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동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A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의 정의 판단 시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5자리 중 기존업종과 비교하여 5자리 숫자가 모두 같으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고, 하나의 자리라도 숫자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업종에 해당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5자리(대/중/소/세/세세 분류) 〉

대	중	소	세	세세	
6	3	9	9	1	보안프로그램
6	3	9	9	9	음성변환서비스업

< 이종업종 >

*'20. 10. 7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 10. 8. 부터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20.10. 7. 이전 설립 기업에도 적용)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2 | 사업 승계 시 창업기업 인정 여부

Q

2020. 6. 30. 타인으로부터 개인사업을 양도·양수하여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이전받아 동일 업종으로 새로운 개인사업을 개시하였고 당시 기준에 따라 타인으로부터의 사업 승계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양수·양도의 인정범위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현행 기준으로 창업기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2020. 10. 7. 이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상속·증여, 양도·양수 등)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행령이 '20. 10. 8. 개정되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전의 '사업 승계'에서 '사업의 상속·증여'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사업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3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Q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개인인 중소기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타인으로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는 개인·법인 여부, 동종업종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개인사업자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 시 창업여부 판단〉

구분	사업	설립	창업 여부
타인 (개인·법인)	(사업) 상속· 증여	개인기업	동종 : 창업 ×
			이종 : 창업 ○
		법인	동종 : 창업 ○
			이종 : 창업 ○

A

- ☑ 상속 또는 증여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등입니다.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1호

4

타인의 사업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Q

타인의 사업을 유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 ④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산 등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 간 유상으로 이루어진 ‘양도·양수’를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상속’ 또는 ‘증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1호

5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

Q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개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폐업 여부, 동일업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종 또는 이종 업종 모두에 대해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신규개시하는 경우 〉

주체	폐업 여부	설립	창업 여부
개인	폐업 × (기존 사업 계속 영위)	개인 설립	동종 : 창업 ×
			이종 : 창업 ×

※ 동종 업종으로 개시 : 사업 확장으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이종 업종으로 개시 : 업종 추가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

Q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사업자의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7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

Q

개인사업자가 기존과 다른 업종으로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업종 전환일을 기준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므로 기존 사업체의 업종 전환은 창업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8

개인사업자를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에 중소기업을 운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Q

기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있었으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 개인사업자를 개설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개인인 중소기업자를 영위하면서 새로 개인인 중소기업자를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④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위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체를 영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 전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개설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폐업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 여부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공식적인 서류로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9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추가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새로운 개인사업자의 창업 인정 여부

Q

기존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였는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새로운 개인사업자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인사업의 개시 시점에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더라도 새로운 개인사업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0 | 개인사업의 공동사업자 모두가 창업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Q

여러 명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신설되는 사업장이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공동사업자 모두가 창업요건에 해당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 여러 명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신설되는 사업장이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공동사업자 모두가 창업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자 중 한명이라도 기존 사업 폐업 이후 3년(부도·파산의 경우는 2년) 내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공동사업자는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공동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1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공동사업 해지 후 개인기업의 신설 시 창업 해당 여부

Q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해 오던 개인이 공동사업의 구성원을 탈퇴하거나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④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해 오던 개인이 공동사업의 구성원을 탈퇴하거나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 개시시점, 동종업종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3년이 초과하였거나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 단, 공동사업 계약 해지 후 3년을 초과하여 개인기업을 설립 후 공동해지 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 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창업에 해당됨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공동사업자는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공동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2 | 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Q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의 배우자 B가 배우자 개인의 명의 또는 배우자 B가 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A

☑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배우자가 개인의 명의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B를 기준으로 창업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B가 다른 법인의 등기된 이사(임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법인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B가 다른 법인의 등기된 이사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를 초과 소유하지 않거나 과점주주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법인은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13 |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기업의 신설 시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Q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새로운 개인사업자의 창업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 재직중인 법인은 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하고 있는 법인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이 모두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새로 개시하는 개인 명의의 사업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14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개인·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Q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여부가 궁금합니다.

-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개인·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여부는 사업 개시시점, 동종업종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폐업 3년 이내에 동종업종으로 개인사업자 개시 또는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주체	폐업여부	구분(설립)		창업 여부
개인	폐업 ○	3년(2년*) 이내 * 부도, 파산	개인설립	동종 : 창업 × 이종 : 창업 ○
			법인설립	동종 : 창업 × 이종 : 창업 ○
		3년(2년*) 초과 * 부도, 파산	개인설립	동종 : 창업 ○ 이종 : 창업 ○
			법인설립	동종 : 창업 ○ 이종 : 창업 ○

A

※ 중소기업(개인·법인)의 사업개시일(개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개업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창업 여부 판단

- ✔ 이 경우 부도·파산 관련 증빙서류는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면책 선고문,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반드시 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 필수)
- ✔ 다만, '25. 6. 12.부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의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하고,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폐업 후 기간 및 업종에 제한 없이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15

기존 법인을 폐업한 후 기존 법인의 임원이 동종 업종의 법인을 다시 설립하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

Q

기존 법인을 폐업한 후 기존 법인의 임원이 동종 업종의 법인을 다시 설립하는 경우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폐업 후 동종의 개인사업자를 다시 개설하는 것과 같이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 자체는 존속하므로, 법인 해산(또는 해산간주)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신설 법인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위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또는 해산간주)된 후 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16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Q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한 창업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종업종 여부, 주식지분 소유비율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과 신설 법인의 영위 업종이 동종이고, 법인 대표가 친족과 합산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주체	폐업 여부	설립	창업 여부	
			동종	이종
개인 (A)	폐업 ×	법인 설립 (B)	동종	B법인의 주식을 (A 개인대표 또는 A 개인대표 + A대표 친족) 50%초과 소유 또는 최다 소유 : 창업 × B법인의 주식을 (A 개인대표 또는 A 개인대표 + A대표 친족) 50%이하 소유하면서 최다 미소유 : 창업 ○
			이종	B법인의 주식을 (A 개인대표 또는 A 개인대표 + A대표 친족) 50%초과 소유 또는 최다 소유 : 창업 ○ B법인의 주식을 (A 개인대표 또는 A 개인대표 + A대표 친족) 50%이하 소유하면서 최다 미소유 : 창업 ○

※ 친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7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했을 때, 법인의 최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Q

법인 설립 시 지분 보유가 동일하면서 지분 비율이 가장 높은 주주가 두명 이상 있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들을 모두 최대주주로 판단합니다.(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예를 들어, A 법인의 주식을 甲이 40% 乙이 40% 丙이 20% 보유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 모두가 최대주주가 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8 | 개인사업 운영 중 설립하여 창업기업으로 인정된 동종 업종 법인의 주식을 개인사업자 폐업 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Q

개인사업 운영 중 주식 지분 50% 이하로 동종 업종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이후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④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법인은 계속해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19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영리사업의 창업 해당 여부

Q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20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다른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여부가 궁금합니다.

-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주식 소유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기존 법인과 소속임원의 지분을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체	설립	창업 여부	
		동종	이종
법인 (A)	법인 설립 (B)	동종	B법인의 주식을 (A법인+A법인임원) 50% 초과 소유 : 창업 ×
			B법인의 주식을 (A법인+A법인임원) 50% 이하 소유 : 창업 ○
		이종	B법인의 주식을 (A법인+A법인임원) 50% 초과 소유 : 창업 ×
			B법인의 주식을 (A법인+A법인임원) 50% 이하 소유 : 창업 ○

※ 임원의 정의



「창업기업 및 해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6. 1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71호, 2025. 6. 12., 일부개정]
제5조(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 ①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 주식의 지분 소유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주식 및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록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21 | 기존 법인의 임원직을 유지하면서 설립한 법인의 경우라도 새로운 법인이 창업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나요?

Q

설립일이 2022. 6. 28. 이전인 법인인 기업인데, 설립 시 기존 법인의 소유 주식은 없고 기존 법인 소속 임원이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④ 위 사례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및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존 법인의 임원이 신설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6. 1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71호, 2025. 6. 12., 일부개정] 제5조(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 ①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 주식의 지분 소유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주식 및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다만, 기존 법인이 신설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임원의 소유 주식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2022. 6. 29. 시행된 舊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3호)와 그에 따라 제정된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는 2022. 6. 29. 시행된 舊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3호)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창업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22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창업 제외 기준에 해당하였으나 추후 시정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Q

중소기업인 법인 A가 법인 B를 설립하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법인 A가 보유한 법인 B의 주식 60%를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개인 甲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 B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법인인 기업(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 B는 기존 법인 A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를 초과 소유하면서 설립한 법인이므로, 그 사업 개시 시점(법인설립등기일)에 창업에서 제외되며, 이후 법인 A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지분율을 50% 이하로 조정한다고 하여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사업개시일(법인설립등기일)에 그 해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23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지배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Q

신설 법인의 주식을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이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 ☑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호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지배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신설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호

24 | 기존 법인의 임원이 등기상 사임한 날과 실제 사임한 날이 다른 경우

Q

신설 법인의 설립일 전에 기존 법인의 임원직을 사임했는데, 기존 법인의 등기상 사임일이 신설 법인의 설립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설 법인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 제1항 제4호와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기존 법인 또는 기존 법인의 소속 임원이 신설 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는 법인의 사업 개시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 설립 또는 신청 시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임원의 사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신설 법인의 법인설립 등기일 이전에 기존 법인의 임원직을 사임한 사실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신력 있는 서류로 입증한다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25 | 기존 법인을 대표이사로서 운영 중 국세청에 폐업 신고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인정 여부

Q

기존 법인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다가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경우 신설 법인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 ☑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을 신고하더라도 법인이 소멸되거나 임원 기록이 말소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산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법인이 해산되어 임원기록이 말소된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새로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 이하로 소유하면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창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26 | 기존 법인이 해산간주된 이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Q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기존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해산간주 되었습니다. 해산간주일 이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는데 신설 법인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 기존 법인이 해산간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기록도 함께 말소되므로 해산간주일 이후 기존 법인과 관계는 새로운 법인의 창업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있던 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27

기존 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기존 법인 소속 임원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Q

기존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을 후 기존 법인 소속 임원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새로운 법인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 파산선고의 경우 기존 법인의 등기상 임원기록이 말소되는 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법인의 지분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법인 소속 임원이 신설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창업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법인은 본래 목적상 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파산선고일 이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법원의 허가에 따라 기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위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의 임원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50%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는 기존 법인의 파산 등과 관계없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28

창업기업인 법인이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 재개 시 창업기업 인정 여부

Q

2022. 7. 1.에 설립하여 '뉴스제공업(63910)'을 영위한 법인이 2022. 8. 1.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후 2022. 12. 31.에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동일 법인으로 2023. 3. 31.에 이종 업종인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지위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

- ✔ 창업기업인 법인이 등기부등본상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후 동종 또는 이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은 창업기업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은 창업기업 지위를 유지합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29

기존 법인의 임원을 사임하고 신설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Q

기존 법인의 임원으로서 신설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 지분이 50% 이하로 취득하여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 후 기존 법인의 임원직을 사임한 다음, 신설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추가로 매수했는데 창업기업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 기존 법인의 임원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인의 임원직을 사임한 후 신설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추가로 매수 하였다면 기존 법인의 임원이 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30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매각하는 경우

Q

창업기업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만큼을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창업기업의 지위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④ 창업기업(A)의 주식을 양수하는 기업(B)의 기업 규모, 설립 시점 등에 따라 주식 양도 후 A의 창업기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주식을 인수한 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거나 그 계열사에 해당하면서 A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인수한다면 A는 대기업 계열사가 되므로 창업기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

B가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가 아니라면 설립 시점에 따라 창업기업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A가 B보다 먼저 설립된 경우 B의 주식 양수가 창업기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경우는 A의 창업기업 지위가 상실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31 | 창업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Q

창업기업인 법인(A)이 창업기업이 아닌 법인(B)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A의 창업기업의 지위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 창업기업인 법인 A가 창업기업이 아닌 다른 법인인 기업 B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이 A이므로 창업기업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흡수합병 후 주주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법인의 임원이 A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A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다면 A의 창업기업 지위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32

1인이 주식 100%를 소유한 두 법인을 같은 날 설립한 경우 창업인정 여부

Q

甲이라는 개인이 주식 100%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를 같은 날 설립한 경우 A와 B의 창업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 법인이 기존 법인을 영위하면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중에 설립된 법인은 창업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먼저 설립한 회사를 판단할 수 없으나 둘 중 하나의 법인에 대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였다면,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신청기업을 먼저 설립한 회사로 보아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설립된 두 개의 법인 중에서 먼저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다른 법인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33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Q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과점주주에 합명회사의 경우에 대한 ‘합명회사의 사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과점주주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중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합명회사의 사원’을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국세기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4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34 |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립할 경우 창업 인정 여부

Q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립할 경우, 해당 지점은 창업에 해당이 되는지요?

A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에서 “법인의 사업 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의 지점은 본점의 지휘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소의 하나이므로 법인과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일 법인의 지점 설립은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3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Q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여부는 동종 업종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동종업종인 경우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 ✔ 회사의 형태변경 사례
 - 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상호간 법인형태 변경(「상법」)
 - ② 상법상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협동조합기본법」)
- ✔ 다만, 기존에 “창업기업”이었던 법인인 기업이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①형태변경 전 법인의 대표자가 형태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되고, ②형태변경 전 법인의 발행주식 소유자가 형태변경 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형태변경 시 사업개시일은 형태 변경을 완료한 날이 아닌 형태변경 전 법인의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36

서로 다른 두 법인의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시 창업기업 인정 여부

Q

창업기업이 아닌 두 법인 A, B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 C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 C는 창업기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 현행 시행령에서는 두 법인 A, B의 합병을 통해 법인 C를 신설하는 경우 기존 법인은 소멸되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신설 법인 C를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업기업인 법인 A가 다른 법인 B를 흡수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도 지분 관계 등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법인 A의 창업기업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37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Q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등의 경우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현재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없으며 위의 적용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은 창업지원의 적용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38

기존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던 기업의 창업기업 인정 여부

Q

사업개시일이 '19. 6. 12. 이전인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당시에는 부동산업이 창업 제외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창업 제외 업종에서 부동산업이 삭제되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현행 기준으로 창업기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등의 경우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없으며 위의 적용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은 창업지원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부동산업은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관련법령 또는 용어해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창업기업 범위 해설

발행일	2025년 8월
발행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전화	044-204-7626

